

서울특별시의회
제30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대표 발의 : 이석주 의원(국민의힘, 강남구 제6선거구)

(의안번호 : 제2451호)

21. 6. 18

서울특별시의회
교육위원회

안녕하십니까.

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

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.

국민의힘 강남구 제6선거구 출신 이석주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

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

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

자치단체 귀책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

대부료·사용료의 감면율을 확대하여

지역경제 조기 극복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

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

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

는 것으로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

본의원이 제안드린 동 개정안을
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